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3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5088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김○○
피고, 피항소인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이○○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단6476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393,450원(취득세 11,942,610원, 지방교육세 1,125,600원, 농특세 562,800원, 가산세 3,762,440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30

부과처분 및 17,370,940원(취득세 11,895,230원, 지방교육세 1,145,700원, 농특세 572,850원, 가산세 3,757,1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각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제10면 제1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G종교단체(이하 'G종교단체'이라 약칭한다)은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하는 종교단체로서(종헌 제2조), 승려와 신도로 구성되고(종헌 제8조), 의식(儀式), 법회(法會), 계단(戒壇)과 같은 종교행위를 기본으로 한다(종헌 제13 내지 18조). G종교단체의 종정(宗正)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정신적 지도자이다(종헌 제19조). G종교단체 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30

헌에는, 원로회의, J,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 법규위원회, 중앙 및 교구 선거관리위원회, 본사주지회의, 교구, 사찰 등이 주요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갑 제10호증 참조).

한편, 원고는 G종교단체의 중앙종무행정기관인 총무원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제포교활동, 불교문화 홍포(弘布), 포교·교육 사업, 사회복지사업, 각종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G종교단체의 종단과 사찰은 원고와는 별도로 각각 재산을 소유하기도 하는데,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가진다(종헌 제54조 제5항).

위와 같은 G종교단체의 구성이나 기구, 종교행위 내용,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종단의 재산 소유 및 관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J 의장스님과 총무원 산하 각 본부장 스님이 신도와의 관계에서 의식, 법회 등의 종교행위를 직접 담당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와 같은 불교의식, 승려와 신도의 수행이나 교화 등의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일지(갑 제18호증)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단 시무식, H 신년사업계획 회의, 총무원장스님과 원로스님 신년하례, J 사무처 집무와 임시회, 원로회의 등과 같은 행사를 위하여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원고는, J 의장스님과 총무원 산하 각 본부장 스님이 G종교단체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스님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체류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어, 결국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30

다.

J는 종단의 입법기구로서 종헌 종법 개정안, 원로회의 의원 추천, 예산안, 교구획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하고(종헌 제36조), 총무원은 중앙종무행정기관으로 사찰의 주지를 임면하고 중요사찰의 예산승인권 및 예산조정권 등을 갖고 종무행정을 통할한다(종헌 제54조). 비록 G종교단체 종단을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G종교단체과 원고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G종교단체은 원고와 독립된 지위에서 종교행위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G종교단체은 의식, 법회, 계단과 같은 종교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활동을 하는데, G종교단체 활동 전체를 기준으로 종교행위 목적사업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취득세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J나 총무원의 역할 및 G종교단체 활동과의 관련성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종교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30

판사 박○○